



성동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

1. 보육가족과-30518(구청장 방침 제548호, 2014. 10. 24)호 「성동의국민근로자센터 재산교환 시행계획」 과 관련입니다.

2. 성동구의국민근로자센터와 시유재산(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 예정 부지) 간의 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2조(공유재산의 관리),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(공유재산·물품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), 제3조(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)에 의거 재산분류 및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- 재산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 내역 -

| 소재지 | 지목 | 면적(m ²) | 취득방법 | 재산분류 | 재산관리관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성수동1가 685-581 | 잡종지 | 226 | 교환 | 행정재산 | 자치행정과 | 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예정부지 |

- 붙 임 1. 성동의국민근로자센터 재산교환 시행계획 1부.
- 2. 등기부등본 1부. 끝.

주무관

김대경

재산정책팀장

유종식

재무과장

김성철

기획재정국장

04/28
김종순

협조자

시행 재무과-11269 () 접수 ()

우 133-7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

/ <http://www.sd.go.kr>

전화 02-2286-5265 /전송 02-2286-5916

/ kimdg7340@sd.go.kr

/ 대시민공개

궁금할 때, 불편할 때 국번없이 120으로!